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 번호	86

제출년월일 : 1999. 9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19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,558,466천원으로서 이중 9건에 641,620천원을 지출하였으며,지출내역은

○등반사고실종자 수색 급식비	2,404천원
○평창군소속 공무원의 유족 보상금	56,961천원
○평창군소속 공무원의 유족 보상금	65,252천원
○농지소유및이용실태조사업무 인건비	4,480천원
○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	43,459천원
○병충해공동방제비 부족분	20,844천원
○공공근로사업 인건비	111,303천원
○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	328,870천원
○농업기술센터 키폰교체설치비	8,047천원임.

3. 관계법령

0 지방자치법 제120조
0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 제120조

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.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제34조(예비비)

0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(예비비사용의 제한)

0 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.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19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조서

(단위 : 천원)

구분				지출결정액	지출원인행위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사유
과목			사업명						지출결정일자	지출일자	
세항	세세항	목									
계			9건	641,620	641,620	641,620					
재난관리	경상적경비	301-10	실종자수색 급식비	2,404	2,404	2,404	0	0	2. 6	3. 2	등반사고실종자수색동원인원 급식
서무관리	경상적경비	307-05	유족보상금	56,961	56,961	56,961	0	0	5. 8	5.25	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족
서무관리	경상적경비	307-05	유족보상금	65,252	65,252	65,252	0	0	6. 1	6.20	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족
농정관리	국고보조	201-11	농촌실업대책사업	4,480	4,480	4,480	0	0	6.23	6.30	농촌실업대책사업 군비부담금
인사관리	인건비	101-02	명예퇴직수당	43,459	43,459	43,459	0	0	7. 9	7.13	명예퇴직수당 부족
농산관리	국고보조	402-02	공동방제사업	20,844	20,844	20,844	0	0	7.24	9. 2	병충해발생지역 긴급공동방제

19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조서

(단위:천원)

구분				지출결정액	지출원인행위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사유
과목			사업명						지출결정일자	지출일자	
세항	세세항	목									
사회진흥	국고보조	201-11	공공근로사업	111,303	111,303	111,303	0	0	9.14	9.16	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
인사관리	인건비	101-02	명예퇴직수당	328,870	328,870	328,870	0	0	10. 1	10. 8	명예퇴직수당 부족
통신전산관리	자체사업	401-04	키폰교체설치	8,047	8,047	8,047	0	0	10.13	12. 9	농업기술센터 회선증설 키폰교체